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박상웅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-|
| 의안 번호 | 18999 |
|----------|-------|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8.

발 의 자 : 박상웅 · 김민전 · 정동만
조은희 · 김미애 · 송석준
강승규 · 김상훈 · 김대식
유용원 · 박덕흠 · 강대식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과 산업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, 이를 위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·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.

그런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재정지원이나 고용안정 조치를 넘어, 주된 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 제도에는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역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구

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,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).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주된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 전략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2년”을 “3년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주된 산업 분야 사업재편, 기술개발 등을 통한 고도화 방안 또는 신산업 육성 방안 등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된 산업의 고도화 또는 신산업 육성 등 산업구조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제9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0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2.·3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| <u>는 경우</u> 2.·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